



대학 교육의 총체적 개혁을 요구하는 학생 등록금



윤 지 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명문 대학 입학이 출세와 명예, 경제력을 보장해 주는 오늘의 학력 사회에서 대학 등록금은 지금까지 그저 땅 팔고 논 팔아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IMF를 맞아 실직과 감봉 등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동결된 대학 등록금일망정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2000년을 앞두고 IMF가 극복되었다는 신문지상의 호들갑스러운과는 달리 서민 가계는 여전히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마다 속속 두 자리 수 등록금 인상 발표를 하자 엄청난 사회 문제화되었고 대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을 펼쳤다.

'99년 1학기 동안 대학생 3명중에 1명 꼴인 54만 명이 학비 부담으로 휴학, 자퇴하는 등 한해에 600만원을 넘어서는 대학 등록금은 가계 소득 증가분의 서너배가 넘는 인상일로를 걷고 있다. 프랑스 대학은 모두 국·공립으로 한해 등록금이 보통 1,000프랑(약 20만원) 미만으로 많아야 2,000프랑을 넘지 않고, 프랑스에서 최고 직업은 학생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대중 교통비, 집세, 박물관, 공연장 입장료까지 할인 받고 주거비까지 보조를 받는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현실에 아연할 따름이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의 2~3배 많은 것이 사실이나 국민 소득 수준과 교육의 질, 정부의 지원 수준에 비추면 우리가 오히려 몇 배나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대학의 교육 환경과 교수대 학생 비율 등 교육의 질은 더욱 후퇴하면서 학부모에게 등록금 인상만이 가중되는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기성회비 부당 징수 문제

그리하여 전개된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문제 제기 되었던 부분이 기성회비 강제 징수 문제였다. 대학 기성회비는 기성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학부모들이 대학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회비 성격이

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학 당국은 기성회 가입 의사를 타진하는 절차 없이 대학 등록금의 30%에 이르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와 함께 고지하여 일률적으로 징수하여 왔다. 또 기성회에 가입한 학부모들이 기성회비 책정과 예·결산 심의를 하고, 기성회 임원도 선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당국이 임원을 선임하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의 실태이다. 이에 대해 학생들과 학부모 단체에서 기성회비의 수업료와의 일괄 고지, 강제 징수의 부당함을 여론에 알리고 분리 고지 운동을 벌여 나가자 지난 해 7월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총장단 회의에서 기성회비·수업료 통합 고지를 합의하였다. 대학생들과 학부모 단체, 교육 시민 단체에서 대학들의 이러한 단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교협에 주의 촉구하는 것에 그쳤다. 또한 학생들은 기성회비 부당 징수에 대해 공탁 소송을 벌였는데, 법원은 기성회비를 관행적으로 수업료와 같은 개념으로 수년 동안 징수해 왔으므로 등록금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기성회비를 공탁하고 미등록한 학생들이 제적되는 사태까지 있었다. 교육법 및 사립 학교법 등 교육 관련법에 기성회 및 기성회비에 대한 법적 명시도 없고, 절차도 전혀 갖추지 않은 기성회비 징수가 관행적으로 있어 왔으니 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모두 납득하지 못하였다. 대학들이 지난 해 2학기부터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 고지한 것을 보면 기성회비의 부당한 징수가 입증된 것이나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성회비 징수라는 편법을 동원해 등록금을 인상해 온 대학이 이제 발빠르게 통합 고지하는 변신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 책임지는 대학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조원에 이르는 이월·적립금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내놓은 '사립 대학 등록금 인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000. 1)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 사립 대학 법인과 대학은 구제 금융 사태로 등록금이 동결됐던 '98년 한해에만 무려 7,428억원이 넘는 이월·적립금을 남긴 것으로 밝히고 있다. 사립 대학들이 '99년 2월 현재 보유한 누적 이월·적립금 총액은 2조 8,260억원에 이르러 이 적립금 가운데 일부분만 인출해도 올 등록금은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연구소의 지적이다. 대학 재정이 열악하여 해마다 학생 등록금을 엄청나게 인상하면서도 이월·적립금을 남기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대학 당국은 이월·적립금이 대학 투자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장기적 대학 발전을 위한 투자는 재단이 해야 할 몫인데도 그 수혜가 당장 돌아오지도 않는 재적 대학생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누적된 이월·적립금을 대학 발전을 위한 재투자에 즉각 나서면서 등록금 인상 문제를 거론할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등록금 문제는 대학 개혁과 관계되어 있다

우리 나라는 전체 대학의 83%가 사립 학교이고, 그 사립 학교 대부분이 정부 보조금과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전국 사립 대학의 학교 운영 수입 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96년 68%, '97년 67.4%, '98년 68.8%로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지만 법인 전입금 비율은 '96년 6.9%, '97년 7%, '98년 5.6%로 10%가 채 안 된다. 재단 전입금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학생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대학 운영을 하고자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립 학교 법인의 저수

익성 수익용 기본 재산의 고수익성 재산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수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각종 세제상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백성준, ‘민간 부담 교육 재정의 문제와 발전 방향’, 1999.)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본적으로 사학의 법정 전입금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사립 학교법에 “학교 법인은 수익용 기본 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액을 학교의 연간 운영 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기본 재산에 법정 전입금 미확충에 대한 제도도 없어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사학 재단의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렇게 대학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합리적 등록금 책정과 학교에·결산 심의에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는 전혀 배제되어 있는 현실이다. 해마다 공금 횡령 및 사학 비리가 끊이지 않아 전국의 많은 대학이 분규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대학 재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용되는 구조가 갖춰지지 않은 데에 있다. 현행 사립 학교법은 사립대 법인과 이사장에게 대학 운영의 전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인 운영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는 이사장이 그 정수의 1/3을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로 구성할 수 있어 이사장이 재단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사장은 대학 총장을 임면하고, 교원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임면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마저 이제 모든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교사·학부모·지역 인사가 참여하여 학교 예·결산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데 반해 대학의 경우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운영위원회’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중·고등학교의 8~10배에 이르는 대학 등록금을 내면서도

어디에 써야 할지, 어떻게 썼는지 알지 못한 채 일반적으로 인상된 등록금만을 내야 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대학 재정 운영에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부정과 비리에 얼룩진 사학 재단 문제로 교육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심지어는 1년에 학교를 하나씩 설립하는 사학 재단마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사립 학교법을 개정하여 교수협의회와 학생회, 직원 노조를 법적 기구로 명시하고, 이들을 주축으로 한 대학운영위원회(또는 대학평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사립 대학의 예산은 교수, 학생, 직원 등 전체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편성되어야 한다. 이렇듯 대학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총체적 개혁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다. 대학 등록금 책정 적정화, 대학 운영에 학생회 대표 참여,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 확립, 이 사회의 민주적인 구성과 운영, 총장 선출 민주화, 대학 운영 투명성 확보와 공개화, 사립 학교법 민주적 개정 등 대학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전반적 개혁 과제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

정부의 교육 재정 투자 확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 국가들은 국·공립, 사립 대학을 막론하고 거의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98년 프랑스의 교육 예산이 127조에다 대학 재정 가운데 정부의 분담 비율이 80%가량 차지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사립 대학의 국가 재정 분담 비율이 0.7%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데도 BK21 사업, 대학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등으로 사립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으며, 나아가 국·공립 대학 민영화 및 등록금 현실화까지 들먹이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정부가 이의 실현을 위한 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더욱 축소하려

고 한다. GNP 대비 6% 교육 재정 확보에 대한 교육 공약을 사실상 포기하고 민간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려는 것이다.

대학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축소하고 그 부족분과 재단 전입금 부족분을 모두 학생 등록금으로 메우려는 정책 방향은 수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교육 재정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와 재단, 학생이 적정한 재정 분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학생 등록금만 인상하여 대학 재정을 충당하려는 것은 21세기 교육 복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대학 등록금과 하숙비, 책값과 잡비 등을 감당하기 위해 생존을 위협 당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이월 적립금의 학생 교육을 위한 투자, 재단 전입금의 실질적 확충, 적정한 학생 등록금 책정과 예·결산 공개, 대학 운영의 민주화, 정부의 대학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학 등록금의 합리적 조정과 실질적 인하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대학 당국, 교육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

윤지희

숙명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회장,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교육부 유아교육발전협의회 위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중이다.